

# 03

## Q&A

**Q** 화관법 시행 전에 착공하여 2015년에 완공할 예정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우에도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A** 예,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법 제28조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시에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시행규칙 부칙 제8호 제3항에서 1년 이내 제출할 수 있도록 유예를 두고 있습니다.

**Q** 기존 시설에 인접하여 신규로 저장탱크를 하나 신설하는 경우, 장외영향평가서의 제출해야 하나요?

**A** 예,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저장탱크의 설치가 영업의 변경허가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영업변경 허가 신청 시에 변경된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 2014년에 기존시설의 증설 공사를 착공한 경우에도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제출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A** 취급시설의 증설이 변경허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하고, 단순히 장외 평가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시설의 제출시기에 맞추어 제출하면 됩니다.

**Q** 건설현장 중에서도 콘크리트 폐수의 중화 등으로 가성소다와 같은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건설업체도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 예, 법 제2조 제11호 규정에 따라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취급시설에 해당하므로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60일 이내 완료되는 공사로 일시적으로 이용하고 그 사용이 종료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 건설업에서 수주 받은 플랜트 등이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누가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 주체가 되는 가요?

**A**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에게 작성·제출의무가 있습니다.

**Q**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 취급량, 운전조건 등을 고려하여 위해우려영향범위를 직접 계산 해야 합니다. 위해우려영향범위는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범용프로그램 또는 이와 동등수준의 상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Q** 사업장이 여러 개의 공장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장외영향평가서의 제출은 어떻게 합니까?

**A** 사업장 단위로 제출할 수 있으며, 다만 작성은 단위공장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위공장의 구분은 사업장 형태 및 사업장의 운영체계 등을 고려하여 구분할 수 있습니다.

**Q** 직접 작성하기엔 생소하고 어려운데요?

**A**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의 「정보마당 → 장외영향평가서」에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안내서와 작성예시, 작성지원 범용프로그램 및 사용자 안내서를 다운받아 활용하시고,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자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교육신청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교육마당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장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컨설턴트 지원”을 신청하셔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분기 중에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을 지정할 예정인 바, 이후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상담·문의처

- 화학물질안전원  
- 전화번호 : 042-605-7046  
- 홈페이지 : <http://nics.me.go.kr>

- 화관법 산업계 도움센터  
- 전화번호 : 02-6050-1304  
- 홈페이지 : [www.chemnavi.or.kr](http://www.chemnavi.or.kr)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전화번호 : 02-3019-6711  
- 홈페이지 : [www.kcma.or.kr](http://www.kcma.or.kr)

### 유관기관 연락처

- 한강유역환경청 031-790-2879
- 금강유역환경청 042-865-0761
- 낙동강유역환경청 055-211-1662
- 영산강유역환경청 062-410-5264
- 대구 지방 환경청 053-230-6571
- 원주 지방 환경청 033-764-0985
- 새만금지방환경청 063-270-18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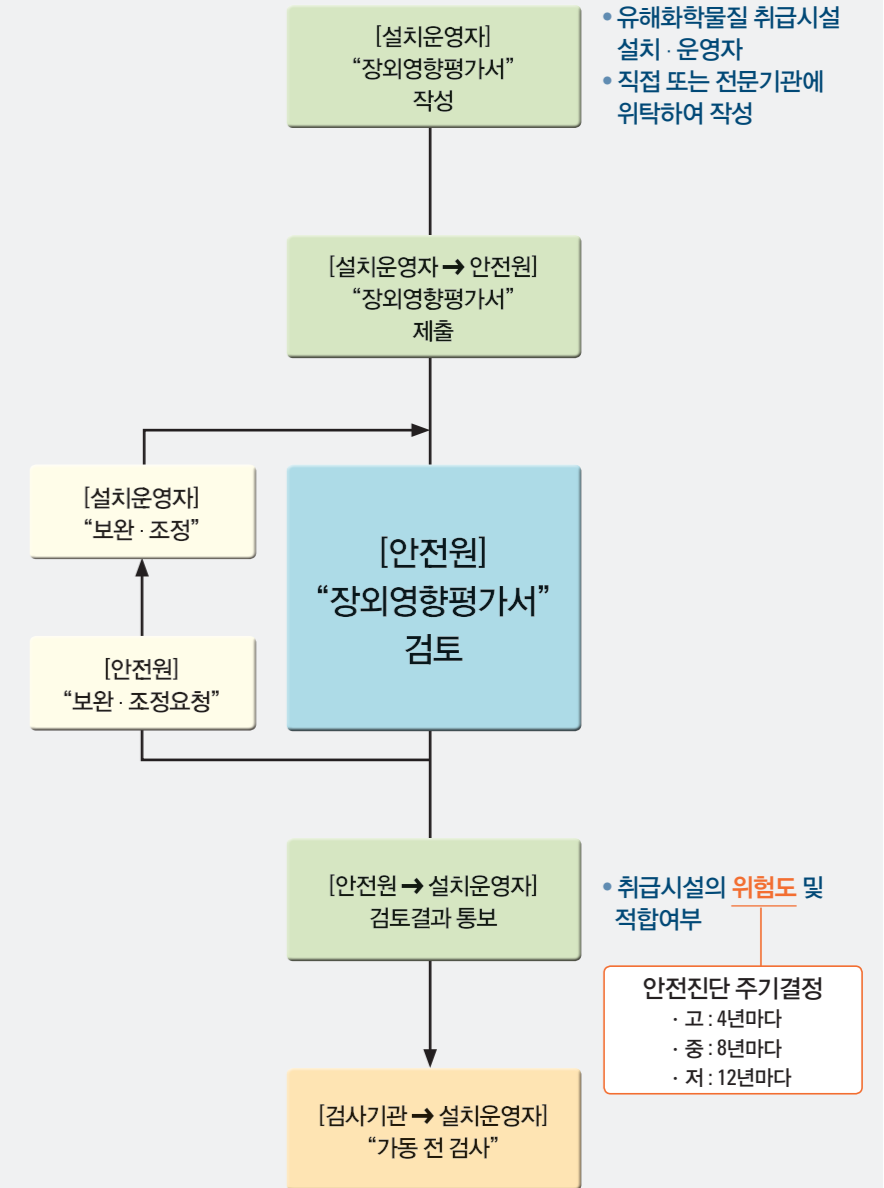
# 장외영향평가서

## 화학물질관리법, 이렇게 준비하세요



# 01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제출 절차 체계도



# 02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 제출

### 누가 작성·제출해야 하나요?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은 제외됩니다.

\* 화학물질정보시스템(http://ncis.nier.go.kr/ncis)에서 유해화학물질 목록 확인가능

### 직접 작성해야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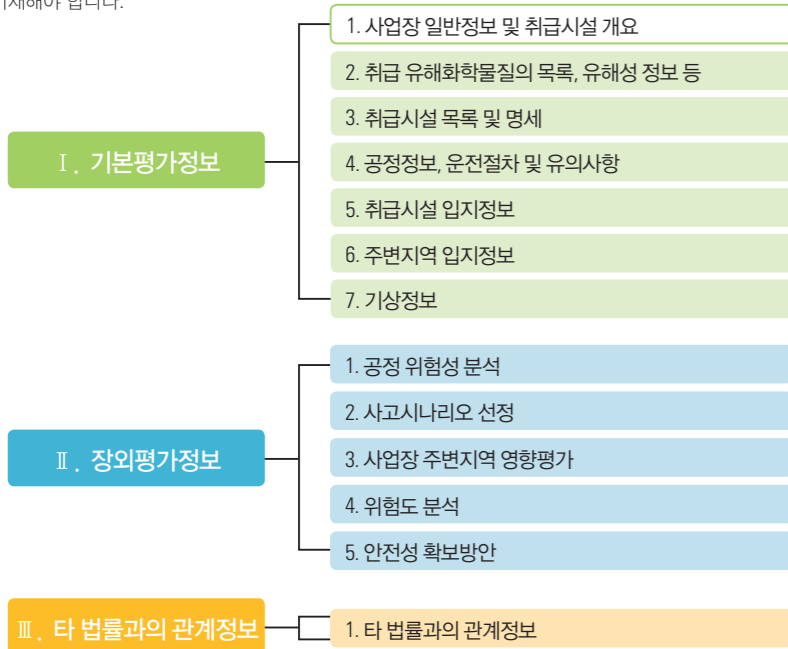
▶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에 의하여 작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가 직접 작성하는 경우에는 16시간의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과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실시하는 16시간의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무엇을 작성해야 하나요?

▶ 기본 평가정보, 장외 평가정보, 타법과의 관계 정보 등 3가지 작성항목을 작성해야 합니다.

- 기본 평가정보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 취급량, 유해성 정보와 취급시설 목록 및 명세 등 공정 안전 기초자료로 구성되며,
- 장외 평가정보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설비의 잠재위험을 확인하고, 사업장 외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포함됩니다.
- 타 법률과의 관계정보는 해당 취급시설·설비를 설치하는데 검토되어야 할 관계법령과 적용여부를 기재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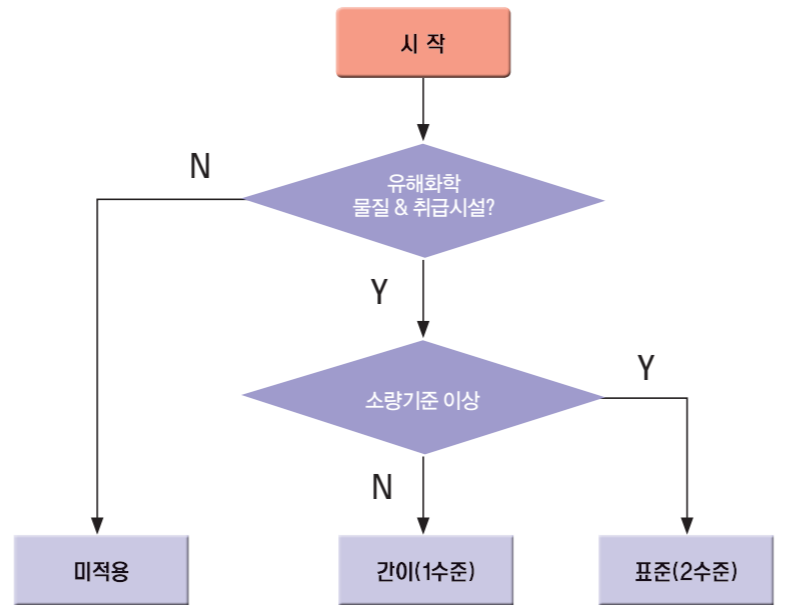
▶ 상세한 사항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와 환경부 고시「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유해화학물질을 소량만 취급하는 시설도 모든 항목을 작성해야 하나요?

▶ 화학사고 발생시 사업장 주변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일정규모 미만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취급물질 정보, 취급시설 목록 및 명세 등 장외영향평가서의 일부 자료\*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① 기본 평가정보 중 i) 취급 화학물질의 목록, 취급량 및 유해성 정보, ii) 취급시설의 목록, 명세, 공정정보, 운전절차 및 유의사항, ② 타법과의 관계 정보

- 대상 해당여부는 환경부 고시「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 신규시설은 해당시설의 설치 공사 착공일 30일 이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공사 착공일”이란 터파기 등 토목공사 이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설비를 실제로 설치·이전하는 공사를 시작하는 날을 말합니다.

▶ 기존시설은 다음에 해당하는 시기에 제출해야 합니다.

#### [ 화관법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

- 2015년 12월 31일까지**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작성·제출 대상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6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하는 자
- 2016년 12월 31일까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자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유해·위험물질을 연간 1,000톤 이상 취급하는 자
- 2017년 12월 31일까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자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유해·위험물질을 연간 1,000톤 미만 취급하는 자
- 2018년 12월 31일까지**  
- ①부터 ③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연간 100톤 이상 취급하는 자
- 2019년 12월 31일까지**  
- ①부터 ③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연간 100톤 미만 취급하는 자

#### [ 화관법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한 자 ]

- 2018년 12월 31일까지**  
- 위 ①부터 ③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연간 100톤 이상 취급하는 자
- 2019년 12월 31일까지**  
- 위 ①부터 ③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연간 100톤 미만 취급하는 자

### 시설을 증설하는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없이 바로 제출해야 하나요?

▶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신청 전에 제출하여야 하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수준의 증설은 기존시설과 같은 유예기간이 적용됩니다.

\*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으로 인한 변경허가사항 중에서 동일한 사업장 내의 취급시설 증설이라 함은 단위설비 용량이 100분의 50이상 증가되는 경우 또는 취급시설의 증설로 일일 취급량 또는 보관·저장량이 환경부 고시「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량기준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신규시설의 경우 영업허가를 받기까지 얼마나 소요되나요?

▶ 장외영향평가서 검토기간(최소 30일)부터 설치검사기간(최소 30일) 및 영업허가(변경허가)기간(최소 15일)까지 행정소요를 고려하면 최소 3~4개월이 소요됩니다.

### 제출한 장외영향 평가서를 변경 제출해야 하는 경우는?

▶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 사항은 모두 해당합니다.  
- 다만, 장외 평가정보 변경으로 인한 영업 변경허가사항 중에서 “동일한 사업장 내의 취급시설 증설”이라 함은 단위설비 용량의 100분의 50이상 증가되는 경우 또는 취급시설의 증설로 일일 취급량 또는 보관·저장량이 환경부 고시「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량기준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제출은 어디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장외영향평가서를 3부 작성하여 화학물질안전원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소 및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90 화학물질안전원 (한국선급건물2층)  
· 연락처 : 042-605-7045~47

### 제출할 때 수수료가 있나요?

▶ 수수료는 없습니다.